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 (김문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794

발의연월일: 2024. 9. 9.

발 의 자:김문수·조 국·권향엽

전진숙 · 김영배 · 이훈기

서미화 • 문금주 • 최민희

양부남 · 최기상 · 송재봉

문정복・김동아・김 윤

정준호 • 이병진 • 이수진

조계원 • 박지원 • 이용선

정을호 · 김영호 · 민형배

조인철 의원(25인)

제안이유

과거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이 보편적 인권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미성숙하고 불완전한 존재라는 이유로 권리의 주체가 아닌 통제의 대 상으로 여겨져 왔으며, 교육 영역에서도 학생을 적극적인 주체라기 보 다는 교육의 대상자로서 간주되어 왔음.

이와 같은 교육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0년 경기, 2012년 서울을 시작으로 광주(2012년), 전북(2013년), 충남(2020년), 제주(2021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으며,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고 인권 친화적인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이 지속되어 왔음.

최근 학생인권이 교권침해의 원인이라는 이유로 충남과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는 등 학교현장에서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약해지고 있는데, 학생인권은 교사의 교육권과 적대적·대립적 개념으로 이해되어서는 아니 되고 오히려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상호 존중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학교의 문화가 정착될 필요가 있음.

이에 학생이라면 누구나 존중받아야 할 학생인권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함으로써 상호 배려와 존중에 기반한 인권 친화적인 학교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이를 법률로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학생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 교육에 관한 권리, 건강과 안전에 관한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양심·종교·의사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 복지에 관한 권리, 자치 및 참여의 권리, 징계 및 징계절차에서의 권리 등의 학생인권을 가짐(안 제8조부터 제25조까지).
- 다. 교육부장관은 학생인권을 증진하고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를 형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함(안 제26조).
- 라. 학생인권 증진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학생인권에 관한 공 론형성과 협력을 위하여 교육부와 교육청에 각각 학생인권위원회

및 교육청학생인권위원회를 둠(안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 마. 각 시·도 교육청에 학생인권센터를 설치하여 학생인권 보호 및 구제 등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학생인권센터의 장을 학생인권옹호관으로 규정함(안 제30조).
- 바.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신청·조사·처리 등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학생인권 보호 및 구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함(안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 사. 학생인권 존중의식의 확산을 위하여 학생인권에 대한 교육·홍보 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학생인권의 날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35조 및 제36조).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 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2. "학생"이란 학교에 학적을 둔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 3. "교직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 및 같은 조 제2항의 직원
 - 나.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의 교원 및 같은 조 제2항의 직원 다.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
- 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5. "학생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

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제3조(기본이념) 학생인권은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에 따라 보장되어 야 한다.
 - 1. 학생인권은 모든 교육·교습 활동에서 보장되어야 하며, 이 법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 2. 학생은 권리의 주체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 3. 학생은 자신에게 미치는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그 과정에서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 4. 학생인권은 다른 학교구성원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장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존중하여야 한다.
 - 5. 학생인권침해 사건의 조사나 처리 과정에서 조사자는 당사자들의 인권과 인격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인권침해의 방지와 더불 어 학교구성원 간의 관계의 회복을 우선 원칙으로 한다.
 - 6. 학칙 등 학교 규정은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교육부장관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이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

- 권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며 교육 정책을 수립할 경우 학생인권이 최대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보호자의 책무) ① 보호자는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보호자는 학생이 상호 존중과 배려에 기반한 민주적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할 책임을 가진다.
- 제6조(학생의 책무) ① 이 법에서 규정된 학생의 권리는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장된다.
 - ② 학생은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학교 및 교직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학생에 관한 다른 법령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학생인권 제1절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8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 조건, 가족 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병력, 징계, 성적(成績), 거주 지역 또는 형태 등을 비롯하여 기타 열

거되지 않은 부당한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부장관,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2절 교육에 관한 권리

- 제9조(적합한 교육을 받을 권리) ① 학생은 자신의 성장발달단계, 장애 등 개인적 특성 및 소질·적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교육부장관,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성장발달단계, 장애 등 개인적 특성 및 소질·적성에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교육부장관,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과도한 학습을 강요하거나 경쟁을 유발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을 선택할 권리) ① 학생은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학교에서의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 ② 교육부장관,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제하여서는 아니되며. 참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초학력 보장법」 제2조제2호의 학습지원대상학생에 대한 학습지원교육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8조제1항의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의 경우에는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거나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을 할 수 있다.

제3절 건강과 안전에 관한 권리

- 제11조(건강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 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고 관련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② 교육부장관,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휴식공간 등 적절한 시설을 운영하고 필요한 휴식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③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생이 건강상의 이유로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 제12조(폭력으로부터의 안전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체벌, 폭력, 사이 버폭력,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 ② 교육부장관,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 대한 체벌,

- 폭력, 사이버폭력,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을 방지하여야 한다.
- 제13조(위험으로부터의 안전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안전하게 교육받고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 ② 교육부장관,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설 및 교육환경을 정비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 ③ 교육부장관,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현장실습 과정에서학생의 안전을 충분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제4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 제14조(신체적 자유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 ② 교육부장관,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복장, 두발 등 용모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 제15조(사생활의 자유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이 침해되거나 감시받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본인의 동의 없이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학칙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 정당한 사

유가 있는 경우 학칙에 따라 학생의 전자기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成績), 학습정보, 병력, 징계기록, 교육비 미납사실 등의 개인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5절 양심·종교·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

- 제17조(양심·종교의 자유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특정 종교를 배척하거나 강요하는 등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8조(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생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학교 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시간. 장

소 또는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절 복지에 관한 권리

- 제19조(학교복지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학습부진, 폭력피해, 가정위기, 비행일탈 등의 각종 위기상황 극복과 적성발견, 진로모색 등 정체성 발달을 위하여 학교에서 상담 등의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교육부장관,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려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예산 등의 자원을 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교육부장관,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학생이 사회복지에 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상담을 제공하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제도를 수립 또는 정비하여야 한다.
 - ④ 교육부장관,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특별한 상담 및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아동복지 및 인권과 관련된 지역 사회의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특히 보호자를 교육하고 보호자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하여야 한다.

- 제20조(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교육부장관,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적정한 양과 질의 도서 및 도서관 공간 확보, 청결한 환경의 유지, 화장실과 적절한 탈의 및 휴식공간의 확보, 적절한 냉난방 관리, 녹지공간 확대 등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21조(급식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안전한 먹을거리로 조리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은 급식재료, 급식업체 등 급식 관련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급식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급식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③ 교육부장관,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친 환경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의무교육 과정에서의 직영급식과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절 자치활동 및 참여의 권리

제22조(자치활동의 권리) ① 학생은 동아리, 학생회 및 그 밖에 학생 자치조직의 구성·소집, 운영, 활동 등 자치적인 활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

- ② 교육부장관,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자치조직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학생자치활동의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성적, 징계기록 등을 이유로 학생자치조 직의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생자치조직의 대표 는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하여야 한다.
-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부당하게 학생의 자치활동을 금지·제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3조(학교운영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 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교육부장관,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과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학생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4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교의 운영 및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의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교육부장관,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경우 학생의 참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8절 징계 및 징계절차에서의 권리

- 제25조(징계 및 징계절차에서의 권리) ① 학생은 인권의 기준에 부합하는 정당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징계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교육부장관,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한다.
 - ③ 학생에 대한 정계는 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기회의 보장, 정계절차 및 정계내용에 대한 충분한설명과 이해 여부 확인,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정당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제3장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체계 제1절 학생인권종합계획

- 제26조(학생인권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학생인권을 증진하고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를 형성하기 위하여 제27조에 따른 학생인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인권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형성의 기본 방향 및 단계별 실천 전략
 - 2. 종합계획 실행에 대한 평가 방안
 - 3. 종합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 4. 학생인권 관련 조사 · 연구 방안
- 5. 학생인권 교육 실시 방안
- 6.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지역사회, 정부기관 및 시·도 교육청과 의 협력 방안
- 7. 학생인권 교육 · 홍보 계획의 수립 · 시행
- 8. 그 밖에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형성에 관한 주 요 사항
- ③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학생인권위원회 및 교육청학생인권위원회

- 제27조(학생인권위원회) ①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형성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학생인권에 관한 공론 형성과 협력을 위하여 교육부에 학생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학생인권에 관한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 표명
 - 2.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 및 결과에 대한 평가
 - 3. 교육정책 및 관련 제도·법령 정비에 대한 개선 권고

- 4. 학생인권침해의 유형, 판단 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 5. 학생인권과 관련된 기관과의 교류 협력
- 6. 학생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 7. 그 밖에 학생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2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은 학생인권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1. 유치원, 초·중등학교 등 교육기관 또는 시·도 교육청에서 교사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10 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3. 판사 ·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4. 인권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법인·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등 인 권 관련 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5. 제2조제2호에 따른 학생인 사람
- 6.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 ③ 위원은 제2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교육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2인
- 2.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3인
- 3. 국회 교육위원회가 추천하는 3인
- 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른 교육감 협의체가 추천하는 3인
- ④ 교육부장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감 협의체는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어 위원을 추천 또는 지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⑥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 ⑦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⑧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하여야 한다.
-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 9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위원 추천·지명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9조(교육청학생인권위원회) ① 학생인권 보호를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청에 교육청학생인권위원회(이하 "교육청학생인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교육청학생인권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3절 학생인권센터 및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등

- 제30조(학생인권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육청에 학생인권센터(이하 "학생인권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학생인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지역 내 학생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조사 및 직권조사, 구제, 유형 및 판단기준, 그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 2. 지역 내 학생인권상황에 관한 실태조사 및 정보·자료의 조사· 수집·정리·분석 및 보존
 - 3. 학생인권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 지침 등의 연구·개발

- 4.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개선 권고
- 5. 학생인권침해 및 학생복지에 관한 상담
- 6.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
- 7. 인권교육에 대한 교재개발 등의 지원 및 정기적인 인권교육 시행
- 8. 위원회 · 교육청학생인권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의 집행
- 9. 그 밖에 학생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학생인권센터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학생인권옹호관으로 한다.
- ④ 학생인권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교육청학생인권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개방형 직위의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 1. 유치원, 초·중등학교 등 교육기관 또는 시·도 교육청에서 교사 또는 교육전문직으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4. 인권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법인·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등 인 권 관련 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5. 그 밖에 학생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사람
- ⑤ 그 밖에 학생인권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 또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제31조(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 ①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그에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학생인권옹 호관이 상담 및 조사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피해학생 이외의 제3자가 한 구제신청에 대하여 피해학생 본인이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 2. 그 밖에 구제신청이 현저하게 이유가 없거나 허위의 사실에 의거 하고 있거나 인권보호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졌음이 명백한 경우
- 제32조(학생인권침해사건의 조사)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제31조제1항의 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권침해 피해당사자(이하 "피해당사자"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사건에 대하여 조사한다. 다만, 사안이 중대하거나 향후 유사한 사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조사를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학생인권옹호관은 교육청학생인권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피해당사자의 동의가 없이 조사할 수 있다.
 -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 교육청, 학교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의 설립자 및 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학생 및 관계 공무원 등

- (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질의할 수 있다.
- ③ 학생인권옹호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 ④ 관계인은 제2항에 따른 학생인권옹호관의 자료요청 및 질의와 제3항에 따른 현장방문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 제33조(학생인권침해사건의 처리)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사건에 대하여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조정·중재 등을 권고할 수 있다.
 - ② 제31조제1항의 구제신청을 받은 학생인권옹호관은 사건을 신속 하게 조사한 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인 또는 교육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 1. 학생인권침해 행위의 중지
 - 2. 인권회복 등 필요한 구제조치
 - 3.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기관 또는 사람에 대한 행ㆍ재정적 조치
 - 4.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권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 ③ 제2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인 또는 교육감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 ④ 학생인권옹호관은 제2항에 따른 권고가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하 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인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교육감

에게 권고할 수 있다.

- ⑤ 학생인권옹호관은 제3항의 조치결과 및 제4항에 따른 권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 제34조(비밀유지의무) 이 법에 따라 학생인권 보호 및 구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학생인권침해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거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보칙

- 제35조(학생인권 교육 및 홍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규정한 학생인권에 관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인권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상담을 학생에게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제36조(학생인권의 날) ① 학생인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학생인권의 날을 지정한다.
 -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학생인권의 날에 적합한 행사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37조(위임규정) 이 법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한 사항과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